

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19. . . (제 회)

의결사항	
------	--

##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19. 10. 7.

# 고성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19. 10. 7.

제출자: 고성군수

## 1. 제정이유

- 가. 고성군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나.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아동 급식지원 조례 목적(안 제1조)
- 나. 급식지원 대상자 및 방법(안 제2조~제3조)
- 다. 급식지원 안내, 대상자 결정 및 이의신청(안 제4조~제7조)
- 라.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 마. 위생·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안 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시행령 제36조제1항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합 의

- 1) 기획감사담당관: 법제심사, 규제심사

2) 복지지원과: 성별영향분석 평가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19-1217호

가) 예고기간: : 2019. 9. 9. ~ 2019. 9. 30.(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보호자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

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고성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제

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8조에 따른 고성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고성

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및 급식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7.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8.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9. 채용 조달에 관한 사항
10. 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급식지원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 급식업무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직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급식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생·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위생 등을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고성군 아동급식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고성군 아동급식 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임기의 기산일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최초의 임기로 본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관련조문 및 비용 발생 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 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사업비
  - 단체급식소 이용아동: 1식 5,000원, 재가아동: 1식 6,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사업규모 : 550명(2020년 기준)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입	계	671,333	671,333	671,333	671,333	671,333	3,356,665
	도비	220,406	220,406	220,406	220,406	220,406	1,102,030
	군비	450,927	450,927	450,927	450,927	450,927	2,254,635
세출	계	671,333	671,333	671,333	671,333	671,333	3,356,665
	도비	220,406	220,406	220,406	220,406	220,406	1,102,030
	군비	450,927	450,927	450,927	450,927	450,927	2,254,635

다. 재원조달 방안: 2020년 ~ 2024년: 본예산(일반회계) 편성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재원	의존재원	220,406	220,406	220,406	220,406	220,406	1,102,030
	자체재원	450,927	450,927	450,927	450,927	450,927	2,254,635
조달	기 타	-	-	-	-	-	-
	소 계	671,333	671,333	671,333	671,333	671,333	3,356,665

작성자: 복지지원과장 이 연 옥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